

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0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2. 제안이유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대 위원 수를 늘려 위원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 연임 규정을 실정에 맞게 한 차례로 축소하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개정
 - 1)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원 확대 및 구성 정비(안 제9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10조)
 - 2)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 참여 촉진(안 제9조제3항 신설)
 - 3)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(안 제9조제6항)

- 4)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 임기의 종기에 맞춤(안 제9조제6항)

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관련 개정

- 1)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(안 제9조의2)
- 2)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의3 신설)
- 3)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 규정 삭제(현행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)
- 4)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를 “예산담당부서장”에서 “주민참여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변경(안 제14조)
- 5)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(안 제18조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 연임 횟수를 축소하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,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

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원 연임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기존 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 임기의 종기에 맞추었음.

- 안 제9조의2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
- 안 제9조의3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-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위원 연임 규정 축소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 참고로 타 자치구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관련 40명 초과 자치구는 18개구이며 40명 이하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6개 자치구임.
- 아울러 위원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2년 임기, 연임 1회 자치구가 19개 자치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.
-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실질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, 정보 격차, 소득 수준,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 계층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현황 1부. 끝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4. 1.] [법률 제20316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, 2021. 1. 12.>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7.>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8. 3. 27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3., 2017. 7. 26.,

2018. 3. 27.>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7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

붙임 2

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현황

연 번	자 치 구	위 원 수		임 기	분 과 현 황
		조 례	현 원		
0	서 울 시	500명	120명	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(연임 1회)	6개분과(20명씩)
1	종 로 구	30명	17명	2년(연임 1회)	3개분과(5~7명씩)
2	중 구	-	40명	-	5개분과(8명씩)
3	용 산 구	50명	48명	1년	3개분과(16명씩)
4	성 동 구	50명	36명	2년(연임 1회)	3개분과(11~13명씩)
5	광 진 구	35명	31명	2년(연임 1회)	2개분과(14~15명씩)
6	동 대 문	50명	39명	2년(연임 1회)	-
7	중 랑 구	70명	70명	2년(연임 1회)	2개 소위원회(35명씩)
8	성 북 구	60명	60명	2년(연임 1회)	4개분과(15명씩)
9	강 북 구	50명	48명	2년(연임 1회)	6개분과(8명씩)
10	도 봉 구	70명	65명	2년(연임 1회)	5개분과(13명씩)
11	노 원 구	20명	20명	-	-
12	은 평 구	150명	150명	2년(연임 1회)	10개분과(15명씩)
13	서 대 문	40~100명	54명	1년(연임 2회)	4개분과(12~14명씩)
14	마 포 구	20명	20명	2년(연임 1회)	2개 소위원회(10명씩)
15	양 천 구	80명	72명	2년(연임 1회)	4개분과(18명씩)
16	강 서 구	50명	47명	2년(연임 1회)	4개분과(15~16명씩)
17	구 로 구	100명	100명	2년(연임 1회)	5개분과(20명씩)
18	금 천 구	40명	36명	2년(연임 2회)	4개분과(9~10명씩)
19	영 등 포	30명	30명	2년(연임 1회)	7개분과(4~6명씩)
20	동 작 구	100명	58명	2년	3개분과(19~20명씩)
21	관 악 구	100명	61명	2년(연임 1회)	5개분과(12~13명씩)
22	서 초 구	50명	34명	2년(연임 1회)	-
23	강 남 구	60명	55명	2년(연임 1회)	5개분과(11명씩)
24	송 파 구	50명	48명	2년(연임 1회)	3개분과(16명씩)
25	강동구	60명	50명	2년(연임 1회)	2개분과(25명씩)